# 국·내외사업자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검토

-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중심으로

김현경 (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)

## 왜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였는가

#### 규제환경 변화

- ✓ 국경 없는 서비스, 국경 없는 규제?
  - : 영토 기반 규제 한계 노출
- ✓ 국내외 사업자 규제역차별 발생

####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주권

- ✓ 인터넷 공간에서의 주권개념의 변화?
- ✓ 국가주권에 기반한 관할권의 범위는?

- 인터넷 공간에서의 국가주권과 규제형평성
- 정부 규제정책의 변화 방향

## 규제 역차별 사례





제한적 본인확인제

- ✓ 표현의 자유, 익명성의 가치, 언론의 자유….
- ✓ 이용자들의 해외 플랫폼 이동,
  사업자들의 규제우회 ···

위한결정(2012.8)

개인정보 취급

- ✓ '구글'의 개인정보통합관리정책
- ✓ 국내사업자의 각종 보호조치 의무 …

청소년 보호

- ✓ 음란물 vs. 유해매체물
- ✓ 정부규제 vs. 자율규제

저작권 집행

- ✓ 다음 · 네이버 vs. 유튜브
- ✓ 갈등·분쟁, 협력, 사용료······

# 인터넷 공간과 규제형평성

# " 규제형평성의 내용?"

집행대상자에 대한 **차별금지**, 공정 경쟁 보장, 수범 자에 대한 집행예측성, 규제의 일관성

. . .

'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' '분배기준 조절의 원칙'

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역시 "규제 형평성의 원리"가 준수 되어야 함

## 현황진단

#### 주권에 기반한 국가규제의 무력화

♥ 사이버 망명, 사업이전 등 국외로 서버를 이전하거나 국외 서비스 이용

####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상실

⊎ 규범의 세계화, 규범의 국제경쟁력 상실: 인터넷 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, 음란물 규제 등

#### 규제품질 저하로 규제비용 과다

- ⋓ 불필요한 규제로 관련 산업 불이익 및 손해 초래 : 抵품질 규제 양산
  \* 판도라 TV, 아프리카TV, 유튜브… "승자독식과 쏠림현상"……
- 규제의 비현실성, 국제적 기준에 미흡한 규범설정,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

국민의 신뢰저하, 규제에 대한 공감대 상실, 부정적 준수율/집행율, 규제의 일관성

… "법을 지키면 손해"라는 인식만 만연

## 개인정보 규제 관련 쟁점들.

- 고지사항에 대한 "명확한 인식가능성"의 정도?
  - 고지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인지가능성을 부여하고 동의를 받 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
  - 이를 어떻게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침묵

#### 인터넷 이벤트 대행 업체 사례

개인정보 동의 시 고지사항을 모니터 화면에 어떻게 구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규제기관 및 법원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(2014년 1월 서울고등법원 판례, 상고심 계속 중)

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고지사항에 관하여 <u>이용자에게 인식가능성만을 부여한 것으로는 충분하지</u> <u>않고</u> 이용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수집이용,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 및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히 인식, 확인하게 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여부를 판단,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. 나아가 <u>그러한 이용자의 동의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</u> 동의라고 보려면 "미리" 법정 고지사항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고 "명확하게 표시"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알린 상태에서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.....

#### • "Big Data, IoT환경" 의 신규서비스에 대한 법의 현행화 ?

- 실시간·부지불식의 정보유통, 정보전달 .. 매번 사전동의 不可
- **익명의 혹은 순수한 사물위치정보에** 대하여도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이 구현되어야 하나?

#### 〈사례〉능동 형 충돌방지 시스템



능동형 충돌방지 시스템



달리는 A자동차에 A'라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

위치 및 속력정보 = 사물정보

- = 사물위치정보
- = 개인(위치)정보
- ✓ A'는 개인정보처리자?, 실시 간으로 개인정보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하는가?

-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매번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?
  - 정보주체의 동의가 예상되는 사항이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 피한 경우까지 .. **매번 동의 요구**
- 과연 정당한 형사처벌 인가?
  - ✓ 일반형법보다 높은 형벌 규정, 일본, 독일 등 외국에 비해 강한 형벌

- ▶ 결국 '개인정보 처리자'는 면책을 위해 동의서에 지나치게 많은 사항을 고지할 수 밖에…
- ▶ 정보주체는 몰이해적 클릭 동의, 동의의 습관화….

# " 과도한 사전동의 규제"

자세한 설명고지는 이용자의 이해 곤란, 동의 만능주의, 동의사항의 過多, 습관적 동의, 정보주체의 소외, 사업자에게 면죄부, 이용자에게 책임 전가 ···



# '개인정보 자기결정권'의 "形式化"

✓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들에게만 혜택이 발생하는 차별....

### 개선 방안

#### '수집 · 이용 ' 시 과도한 사전동의 규제 완화

- 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·이행을 위한 경우 사전동의 완화

#### 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합리화

- 실시간·부지불식의 정보유통, 정보전달 상대방 특정 곤란....
- 개인정보처리자·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제3자 제공 허용하되, 사후 거부권 부여( Opt-Out 방식)

#### ▶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기술의 법적 지원

- 개인위치정보의 활용, 제3자 제공 등의 과정에서 침해가능성도 증대하므로 위치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이 발전할 필요가 있음
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**보안기술을 지원하는 법** 제 도입 필요
- 공인된 보안기술 적용 시 침해사고 등에서 행정제재 등 감면 조치도 필요

#### • 형사처벌 축소

- '정보통신망법'상의 사전동의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
  - \* 동일 사안에 대하여 '개인정보 보호법'은 형사처벌 규정 없음
- 사기, 사생활 침해 등 불법한 수집, 이용, 제공시에만 형사처벌
- 약관, 개인위치정보취급방침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기재토록 하고, 위반 시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폐지, 사업정지,
   과징금 등 행정제재

#### • 규제대상 위치정보의 범위 축소

- 사물의 단순 위치정보는 사생활침해와 무관하므로 규제대상에서 제 외하고, "개인위치정보"의 범위 축소

# 감사합니다.